

2023년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도내 중장년층의 안정된 일자리 기회 제공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의 참여 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I. 모집개요

□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금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 중장년에게 직무경력형성 기회 제공 및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안정화 지원

□ 사업대상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경기도 내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만 해당
 -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으로 확인되는 기업만 인정

□ 모집인원 : 이음근로 채용 250명

□ 이음근로(인턴) 기간

구분	이음근로 기간	정규직 전환 후 고용유지 기간
1차	2023.04.17.~07.16.(3개월)	2023.07.17.~2024.01.16.(6개월)
2차	2023.05.01.~07.31.(3개월)	2023.08.01.~2024.01.31.(6개월)

※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 지원내용

□ 참여기업 지원내용

- **(이음근로 지원금)** 3개월 이음근로(인턴) 기간 인건비 일부 지원
 - 월 최대 180만원 × 3개월 = 총 540만원
 - 중도퇴사 시, 근무일수 일할 정산 지급
- **(정규직 전환지원금)** 3개월 이음근로 종료 후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 6개월 고용유지 시 3개월 추가 인건비 일부 지원
 - 월 최대 180만원 × 3개월 = 총 540만원
 - 중도퇴사 시,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 제한
- 지원금 1인 최대 1,080만원 지원

□ 이음 근로자 매칭

- 선정 기업에 지원하는 구직자 면접 연계 등 우선 매칭
- 이음일자리 상담매니저를 통해 기업의 특성과 직무를 분석하여 맞춤형 근로자를 매칭·발굴·연계 지원

□ 지원금 지급방식

- 매월 기업에서 급여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재단으로 지원금 신청
 - (이음근로지원금) 3개월 이음근로 종료 후 일괄 신청
 -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일괄 신청

□ 근로계약

- 참여기업과 근로자 간 근로계약은 개별 체결
- 사업참여를 위한 “재단-참여기업-근로자” 3자 약정을 체결하며, 약정 내용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로
- 2023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그 외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준용

□ 정규직 전환 운영

- 기업이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음 일자리 근로 기간 종료일 전까지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 여부 결정
- 정규직 근로계약은 이음 일자리 기간에 연속하여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Ⅲ.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아래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1) 사업장 소재지 및 근무지가 경기도인 기업(사업자등록증 제출)
 - 2)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분류 상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증 제출)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사회적기업인증서 제출)

- 3)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공고일 기준 사업장 4대사회보험 가입 수)
- 4) 「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라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기업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지원제한 기준 고시」에서 정한 공정·노동·환경·납세분야 11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업은 **평가 총점의 20% 감점**

5) 다음 참여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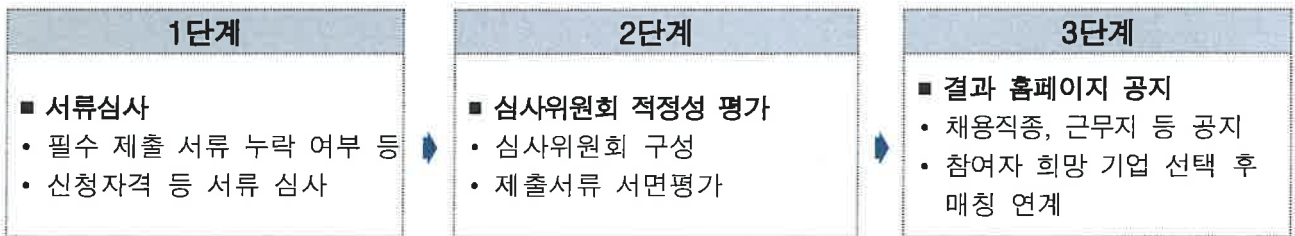
참여 배제 대상 기업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 「초·중등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 부동산업, 일반유희무도유희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틀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산정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기관, 단체 등
-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 이외 도지사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 지원규모 : 인턴 매칭 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개 기업에 최대 5명까지 지원
- 대상업종 : 업종 제한 없음

□ **기업선정**

○ 선정절차



○ 평가항목

기업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업선정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안정성 : 정규직 비율 ■ 재정건전성 : 부채비율 ■ 가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활동 실적(기업 인증 실적 등) - 기 참여기업 중 고용유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참여 의지 ■ 이음근로의 필요성 ■ 이음근로자의 활용계획 ■ 근로자 복지지원 등 ■ 정규직 전환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산업 특성 및 고용유지, 장기근속 가능성 ■ 신중년적합직무 해당 여부

- (우선 선정) 신규 참여기업, 4차산업 업종, 제조업 등 미스매치가 심한 업종 우선 선정
- (가점 적용) 연속 참여 업체 중 고용유지 우수 기업, 주요 활동실적 등

주요 활동 실적

- ☞ 정부 기관 주관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업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강소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 등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 ☞ 경기도 주관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업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사업,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등

○ 심사결과 “적격”기업 대상으로 참여자 매칭

단, 반드시 고득점순으로 매칭되는 것은 아니며, “적격”기업으로 선정 되었더라도 지원자(직무 적합자)가 없는 경우 매칭·연계가 안 될 수 있음

□ 선정 취소 기준 : 선정 취소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
- 신청서나 증빙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추후 확인될 경우
- 선정기업과 근로자간에 배우자 또는 친인척 관계 등 지원 제외 대상자 채용
- 참여신청 배제 대상 기업인 사실이 선정 후 확인되는 경우
- 선정 이후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 위반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 시(제출한 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사업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법 위반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행정처분의 불합리성 등에 따라 억울한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을 통한 구제 추진
- 사업자 선정 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 [의의신청 검토기준] 원칙적으로 법위반 시 의의신청 배척 / 종합 검토후 승인여부 채택
 - ① 귀책사유가 기업에 있지 않거나 통상적으로 인정 가능한 실수 등 요인
 - ② 법위반 경위가 경영상 위기 및 어려움에 따른 한계 소명
 - ③ 법위반사실 개선·치유기간 및 외부 피해 회복의 노력도

□ 신청기간

- 참여기업 : 2023년 3월 2일(목) ~ 3월 20일(월) 18:00까지
- 참 여 자 : 2023년 4월 1일(토) ~ 총원 시
- ※ 참여자 모집 공고는 기업체 선정 후에 별도 진행

□ 신청방법

-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
 - ※ 최초 이용 시, 본인 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필수
- [붙임2]~[붙임5], 기타 제출서류(필수), 증빙자료 스캔 후 파일 업로드

□ 제출서류

○ 제출서류(필수)

- 1) [붙임1] 사업 참여 신청서(온라인 작성)
- 2) [붙임2] 사업 참여계획서
- 3) [붙임3] 참여 기업 소개서
- 4) [붙임4]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5) [붙임5] 기업의 범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약약서

○ 기타 제출서류(필수)

- 1) 사업자(법인)등록증 사본 1부(사업장 소재지 확인)
 -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시근로자 수 확인)
 - 3) 2021년 재무제표 1부
 - 4)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5)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사회적기업확인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발급
- 기타 증빙서류(선택) : 기업 실적 증빙자료(해당기업에 한함)

IV.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제출 시 허위·실적 또는 불법·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실적 제출, 정부관련 사업 등에 대한 책무성 위반 등이 점검 또는 신고 등에 의해 밝혀지게 되는 경우 취소 가능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서류 심사 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미준수 기업 또는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 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비용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불가

V. 참여안내 및 문의

- 서부광역본부 서부광역사업팀 031)270-9750, 9758